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화* · † 김진권

* 한국해양대학교 해상수송과학부 조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해상수송과학부 부교수

A Study on Established Measures of the Korea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Sung-Hwa Hong* · † Jin-Kwon Kim

*, † Divis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요 약 :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 논문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핵심용어 : 해양안전심판법, 심판변론인협회, 해양사고관련자, 심판구조사업

Abstract : Abou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ules regarding establishing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i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were founded in 1999. In recent years, we expect to do the inquiry aid of a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when the government enacted new regimes to better protect th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But despite such rules regarding establishing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the government did nothing to found the Association for the last ten years. Especially, it is necessary a pivotal figure connecting to a similar work boundary, because persons qualified for an inquiry counsel are various. The authors think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plays key part in resolving these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Key words :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nquiry Counsels Association, a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Inquiry aid of a person involved in a marine accident

1. 서 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해양안전심판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면 해양안전심판의 목적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가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해양안전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양안전심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데(해양안전심판법 제40조 참조), 일단 해양안전심판이 개시되면 조

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가 당사자가 되어 대등한 지위에서 각각 공격과 방어의 형식¹⁾으로 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조사관은 심판의 대등한 당사자이지만, 실제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많은 국가보조기관의 협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판과 관련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²⁾. 또한 대부분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판과정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를 평가하고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며, 심판을 받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심리적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³⁾ 결국 해양사고관련자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국가권력이라는

(주) 이 논문은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공동학술대회(2010.4.22)에서 Proceedings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shhong@hhu.ac.kr, 051)410-4274

† 교신저자 : jinkwon@hhu.ac.kr, 051)410-4234

1) 해양안전심판법 제45조에서는 “심판의 재결은 반드시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필요적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심판의 당사자가 서로 구술로써 공격방어방식에 의하여 심리에 협력하는 방법이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재결은 심판정에서 조사관의 구두의 공격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구두방어방식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심근형(1996), 해난심판법, 서울 : 고산사, p.306).

2) 森清(1967), 海難審判制度の研究, 東京 : 中央大出版部, p.308.

3) 이철환(2005), “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안전환경학회지 제11권 제1호, p.2.

강력한 배경과 심판의 절차 및 해양사고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사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심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심판법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자신을 위하여 심판에 참여하여 변론할 수 있는 전문인을 선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해양안전심판법 제27조 참조), 이러한 자가 바로 심판변론인⁴⁾이다. 심판변론인은 조사관과 대등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심판에 참여하여 해양사고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해양사고관련자를 변론하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사와 같은 심판관계인을 말한다.

한편 해양안전심판법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해양안전심판법 제30조의2 참조)이 1999년에 신설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⁵⁾이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판변론인과 같이 업무영역에 있어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은 각각 변호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에 협회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협회들은 근거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바로 협회를 설립⁶⁾하여 법률구조사업, 특허법률구조사업, 납세자 등의 권익보호사업 등을 현재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법에 설립 근거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회설립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인 것이며, 이하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방안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2.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이 늦어진 이유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심판변론인협회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되더라도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와 같이 전문자격증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결국 심판변론인이라는 자격은 하나의 명예 또는 경력의 일부로서 활용될 뿐, 이를 통하여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상황이 이전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변론인들이 협회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협회라는 것이 반드시 시장논리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보장이 된다면 보다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심판변론인협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회를 설립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게끔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이러한 상황 조성을

4)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자
-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교수한 자
- (4) (1) 내지 (3)의 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5)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6)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년 이상 해사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사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7)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에서의 국선심판변론인제도의 도입을 예로 들 수 있다. 즉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안 제30조에서는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6) 1949년 11월 7일 법률 제63호로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1952년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대한변호사회(2002), 대한변협50년사, pp.106-107). 1962년 3월 22일 각령 제556호가 공포되었는데, 이를 근거로 같은 해 3월 27일 특허국에서 회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변리사회 설립총회가 개최되었고, 4월 6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변리사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대한변리사회(2007), 대한변리사회60년사, 2007, p.137).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세무사법이 제정되었고, 세무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1962년 2월초 재무부에서는 세무사회를 설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준비할 가칭 “한국세무사회 창립총회” 소집위원 11명 위촉하였고, 동년 2월 10일에 한국세무사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2일 재무부로부터 한국세무사회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였다(한국세무사회(2002), 한국세무사회40년사, 2002, p.152).

위한 구심점을 먼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목적 자체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및 방지에 기여,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발전에 기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지원, 심판변론인의 지도와 감독, 심판변론인의 품위 및 자질향상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의 보장문제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일본의 해사보좌인회⁷⁾의 경우에도 해사보좌인이 활동하는데 크게 경제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보좌인회를 구성하여 해안심판과 관련한 정책 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심판변론인이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의 심판변론인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협회설립을 주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the registered maritime counsellors

합계	해기사	교수	공무원			변호사
			소계	해심	기타	
280명	96명	5명	33명	28명	5명	146명
100%	34.2%	1.7%	11.7%	10.0%	1.7%	52.4%

자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내부자료

3.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의 필요성

3.1 해양사고관련자 심판구조사업의 원활한 운영

해양안전심판은 해사법률분야와 해기기술분야의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심판으로써 심판당사자는 해양사고의 형태, 복잡성 등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심판변론인이다. 과거 일부 심판당사자는 경제적 부담능력 등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및 기타 권익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국선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선심판변론인의 선정, 국선심판변론인의 수당지급, 국선심판감독위원회 구성 등 세부운영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가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심판구조사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

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국선심판변론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선심판변론인 선정시 또는 국선심판감독위원회 구성시 심판변론인협회장이 추천하는 심판변론인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면서 공정한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선심판변론인의 업무평가 및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민간차원에서의 심판변론인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업무영역에 있어서 서로 동질적으로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 및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직의 부재는 심판변론업무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즉 심판변론업무를 통하여 해양사고의 명확한 원인규명 보다는 오히려 민사사건에서의 보다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판변론인의 업무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신하여 해양안전심판원에 신청, 청구 및 진술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데 이러한 대리 또는 대행업무수행시 위임인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부재하는 것도 문제이다. 심판변론인과 위임인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의 분쟁 또는 불만이 존재하는지 자체도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심판변론인협회가 설립되어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경우 심판변론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조정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에서 심판변론인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영역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변호사, 세무사 및 변리사의 경우도 각각 협회를 통하여 민간차원에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3.3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기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양안전심판은 해사법률분야와 해기기술분야의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심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즉 해사분야에서의 법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항해학 분야와 기관학 분야에 있어서 선박조종, 해상기상, 유체역학, 선박제기, 기관작동의 이해 등 기술분야에 대한 지식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양안전심판법상의 심판변론인의 직무 중의 하나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중 항해사와 기관사 출신은 해기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해사법률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며, 변

7) 해안심판에 있어서 수심임 또는 지정해안관계인의 지능을 보충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일본해안심판법 제19조 내지 제23조에서 해사보좌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심판변론인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8)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조사관 및 기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호사의 경우에도 해사법률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해기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심지어 실제 심판업무에 담당하는 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해서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해양안전심판법 제20조의2에 근거⁸⁾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판변론인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연수교육을 담당할 기구도 없는 상태이다.

심판변론인협회가 설립되면 협회 내에서 심판변론인에 대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해양안전심판법에 신규로 등록된 심판변론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4 심판변론인의 전문성 강화

심판변론인에 대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자체가 심판변론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심판변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기술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심판변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3.5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발전에 기여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여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심판법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제도시행을 위해 해양안전심판법을 주도적으로 개정작업을 한 주체는 해양안전심판원이다. 제도시행을 위해 해양안전심판법을 개정할 경우 상급기관에 대해 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타당성, 이유 등의 논리 개발이 필요한데, 해양안전심판원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게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주장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여 상급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해양안전심판제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절차이며, 이러한 역할을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심판변론인협회라고 할 수 있다.

심판변론인협회는 현행 심판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논리를 민간차원에서 개발하여 해양안전심판원에 건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장과 심판변론인협회장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건의함으로써 해양안전심판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 심판변론인의 위상 제고

일반적으로 협회를 설립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협회

구성원들의 단결력을 통하여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결국 심판변론인협회가 설립될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심판변론인의 위상 제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4. 일본의 유사사례

4.1 해사보좌인회

해사보좌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연찬을 통하여 해사보좌인의 입장에서 해난심판의 충실 및 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해난심판의 목적인 해난의 원인의 규명 및 그 발생의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해사보좌인회는 실제 해사보좌인 간에 정기적인 연찬 모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종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해사보좌인회는 해난 및 해난심판의 조사연구, 해난방지를 위한 연구 및 활동, 해사보좌인의 업무에 관한 연락 및 협의, 해난심판청, 해난심판이사소, 해난심판협회 등과의 연락 및 협의,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 등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사보좌인회 사무국은 현재 동경에 있으며, 임원으로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명, 운영위원 약간명을 두고 있다. 임원은 총회에서 회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회장은 해사보좌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통괄하며, 운영위원은 본회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사보좌인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전문분회의 3개의 회의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연 1회 7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활동계획, 회칙의 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의 결의에 근거한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전문분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되어, 촉탁사항에 대하여 조사·검토가 이루어진다.

해사보좌인회의 회원자격은 반드시 해사보좌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회장 앞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으로 되며, 회원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회원가입비 3,000엔과 연회비 6,000엔을 지급해야 하며, 2009년 1월 1일 현재 83명의 해사보좌인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⁹⁾.

해사보좌인회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¹⁰⁾을 살펴보면 수입의 대부분은 회원회비 및 기타 찬조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의 대부분은 회의비 및 회지발간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사보좌인회는 수익사업 없이 오직 회원회비 등에만 의존하는 수입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사보좌인회 운영에 있어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적자액은 차기에 이월되어 차

9) 日本海事補佐人會(2009), 會誌 第9号, pp.64-65 참조.

10) 日本海事補佐人會(2009), 會誌 第9号, p.44 참조.

기년도의 회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사보좌인회가 주로 친목단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적자의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회원수가 적은 협회의 경우, 운영에 있어서 수익을 오직 회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이며, 각종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4.2 (재)해안심판협회

1965년대 초기에 일본의 경제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해상교통, 선박구조 및 운항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상교통에는 매우 크고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이후 해난사고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수많은 중대한 해난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당시 공익법인인 (사)해안심판연구회와 (사)해안심판부조협회가 고등해안심판청장관의 감독하에 있었다. (사)해안심판연구회는 해안심판 및 해안심판사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해안심판 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해안심판부조협회는 기본적 인권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력이 부족한 해안심판관계인에게 해사보좌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하고, 해안심판에 관한 일체의 상담에 응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양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관계인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층 발전이 기대되었고, 회원간에는 해안심판을 배경으로 한 두 단체의 사업을 통합하여 자금의 안정과 사업을 한층 더 발전해 나가려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래서 양단체는 해산 후, 양단체의 사업 및 자산을 승계하여 1968년 7월 1일에 (재)해안심판협회가 설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재)해안심판협회는 해안심판과 해난사고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해난방지대책에 기여하는 한편, 해안심판관계자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해안심판의 공정한 운영에 이바지하고, 해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안심판행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해안심판협회는 본부를 동경에 지부를 삿포로 외에 전국에 7개 도시에 두고 있으며, 각 해안심판청 소재지 전국 9개소에 “해안심판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¹¹⁾.

(재)해안심판협회는 권리옹호사업으로서 해안심판 상담사업과 해안심판 부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안심판 상담사업은 수심인 등이 적정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안심판상담소가 전국의 해안심판소의 소재지에 설치되

어 있으며, 상담원이 심판의 절차, 해사보좌인의 의뢰, 해안심판 부조 등 해안심판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에 응하고 있다. 해안심판 부조사업은 해안사건이 해안심판소에 제기되어 수심인 등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해안심판의 당사자로서 심판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도와주는 자가 해사보좌인이다. (재)해안심판협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스스로 해사보좌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에 대해 해사보좌인 선임에 필요한 경비를 부조해 주고 있다. 또한 (재)해안심판협회는 해안심판 및 해양사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¹²⁾과 해안심판 및 해난사고에 관한 주지계발사업¹³⁾을 수행하고 있다¹⁴⁾.

(재)해안심판협회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수입내역¹⁵⁾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활동 수입액에서 기본재산이자수입이 13.8%, 창조회원회비수입이 18.2%, 주지계발사업수입이 7.7%, 부조반환금수입이 1.1%, 보조금등수입이 59.07%, 기부금수입이 0.1%, 잡수입이 0.03%를 차지하고 있다. 주지계발사업수입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해안심판청 재결록을 간행하여 유상으로 배포함으로써 얻은 수입이며, 특히 일본해사센터 및 일본재단의 보조금이 전체 예산액의 무려 5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해사센터 및 일본재단의 보조금 중 심판부조 및 상담사업사업비가 19.1%, 기반정비조성금이 62.9%, 재결록간행배포사업비가 9.3%, 연구개발을 위한 조사협력사업비가 8.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해안심판협회의 사업활동과 관련한 지출내역¹⁶⁾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활동 지출액에서 사업비지출이 56.7%, 관리비지출이 4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비지출에서 임원보수 등 인건비성 비용이 71.8%, 사무실 임차료가 15.6%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관리비의 대부분이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시사점

해양안전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우리와 거의 유사한 일본의 사례로써 해사보좌인회와 (재)해안심판협회를 조사·검토한 결과, 해사보좌인회는 실제 해사보좌인간에 정기적인 연찬 모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일종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재)해안심판협회는 일본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해양심판과 관련한 권리옹호사업, 조사연구사업, 출판사업 등을 수

11) www.maia.or.jp/index.html

12)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아시아지역에서의 해난조사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IMO 해양사고조사코드 조약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매년 해안심판재결선례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3) 1. 해안심판청 재결록 간행 및 배포사업 : 해안심판재결서 3개월분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서 편집한 후, 연 4회 발간하여, 해사관계관청, 단체 및 학교 등에 유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2. 해안심판청 재결례집 발행 및 배포사업 : 재결이 있는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여 판시사항, 항적도 등을 붙여 편집한 후 발행, 배포하고 있다.

3. 기관지 “해난과 심판” 발행사업 : (재)일본해안심판협회의 사업 및 해난과 해안심판에 관한 연구 등을 계몽하기 위해 기관지인 “해난과 심판”을 연 3회 발행하여 해사관계관청, 단체 및 학교 등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4. 재결록 전자화 사업 : 해안심판청 재결록의 전자화를 통한 해난방지추진, 해안심판청 재결의 해난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 심판정보 및 각종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4) (財)海難審判協會(2008), 海難と審判 第159号, pp.31-33 참조.

15) (財)海難審判協會(2008), 海難と審判 第159号, p.34 참조.

16) (財)海難審判協會(2008), 海難と審判 第159号, p.35 참조.

행하고 있다. 심판변론인협회는 심판변론인간의 침묵도모 뿐만 아니라,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사보좌인회와 (재)해난심판협회의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사보좌인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익사업 없이 오직 회원회비 등에만 의존하는 수입구조는 협회운영에 있어서 매년 적자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변론인협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각종 수익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재)해난심판협회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의 약 59.07%가 외부에서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외부보조금의 약 62.9%가 특정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반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판변론인협회도 협회 본연의 목적사업인 심판구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관리비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문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시 인건비 부담 및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인원 및 최소공간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만 심판변론인협회 사무실의 경우에는 관련 유관단체에서 심판변론인협회가 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는 방안 또는 법무법인의 대표번호사가 심판변론인인 경우 법무법인 사무실의 일부를 심판변론인협회 사무실로 무상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추진 방안

5.1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

해양안전심판법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심판변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야 한다. 또한 해양안전심판법 제30조의3(사업) 및 해양안전심판법시행령 제26조의3(협회의 사업)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즉 ①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②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③ 심판변론인과 위임인간의 분쟁조정, ④ 해양안전심판 상담, ⑤ 해양사고의 조사·연구, ⑥ 해양안전심판관계법령의 연구, ⑦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⑧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⑨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등 9개 사업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안전심판법 제30조의4(절차 등),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및 해양안전심판법시행령 제26조의2(협회설립허가의 신청등)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절차상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설립 절차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협회설립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가 바로 정관이며, 해양안전심판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정관기재사항에 대하여 법정화하고 있다.

5.2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절차

5.2.1 법인형태의 명확화

1)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

민법상 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심판변론인협회를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은 그 실체가 사람의 단체이고, 이른바 사단이 있는 것으로서 법적 구성이 되어 있는 법인이며, 사원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고, 사원총회에 의하여 자주적인 사단법인의 최고기관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하여 법인이 관리·운영된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일수도 있고, 영리법인일수도 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관리·운영되는 특별재산으로서 이른바 재단이 있는 것으로서 법적구성성이 되어 있는 법인이며,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고, 재단법인설립행위에 나타나 있는 설립자의 의사에 근거하여 특정재산이 관리·운영되며, 이사 등 실제로 재단법인의 활동을 하는 자도 이 설립자의 의사에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영리법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해양안전심판법 제30조의5(민법의 준용)에 의하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변론인협회는 반드시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이때 또한 의문시될 수 있는 것이 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할 것인가

영리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구성원의 이익을 꾀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사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비영리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가장 전형적이면서도 일반적인 영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이며, 주로 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의미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도 함께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니라, 영리사단법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비영리성을 잃지 않는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사업내용 및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변론인협회는 상법상의 회사의 형태가 될 수 없으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3) 공익법인과와의 관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변론인협회는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의 사업목적과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형태로는 설립될 수 없다.

5.2.2 설립절차

1) 개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예술, 교류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요건 가운데서도 특히 목적의 비영리성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① 목적의 비영리성, ② 설립행위(정관작성),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설립등기라는 4가지 절차를 거쳐야 설립할 수 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심판변론인협회는 “영리 아닌 사업(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여기서 “영리 아닌 사업(비영리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의미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예컨대 위탁교육비 징수 등)를 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에 수행하는데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된다¹⁷⁾. 비영리성의 판단은 정관에 기재된 바에 의하기 때문에 정관 작성시에 사업목적의 비영리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

3) 설립행위(정관작성)

통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설립자(발기인)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기명날인해

야 하는데(민법 제40조 참조), 이러한 서면을 정관이라고 한다. 사단법인의 성질상 설립자(발기인)는 반드시 복수이어야 하는데, 민법은 그 수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인 이상이어야 한다.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발기인)들이 반드시 기명날인해야 하며,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의 설립자(발기인)가 사단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는 행위인 정관의 작성 행위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이다. 따라서 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자(발기인)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설립행위를 해야 한다. 해양안전심판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는 정관기재사항에 대하여 법정화하고 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심판변론인협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32조 참조). 따라서 우리 법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가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설립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판례도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는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다툴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¹⁸⁾.

여기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가리키는데, 이점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법 시행령 제26조의 2(협회설립허가의 신청등)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무관청이 국토해양부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5) 설립등기

일반적으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실체이지만, 자연인에 비하면 법인의 조직·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일반 제3자가 용이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조직·내용을 일반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법인의 등기제도이다.

심판변론인협회는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이 3주간의 기간은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설립등기는 사단법인 심판변론인협회의 성립요건이다.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 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이 등기

17) 박윤직(2003),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p.131; 김상용(2003), 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p.224.

18) 대판 1979.12.26, 79누248.

사항이다.

5.3 심판변론인협회 조직구성

5.3.1 조직구성 형태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에 있어서 공통적인 필수조직으로 크게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회는 모든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사회 또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조직이 방대하여 이사회를 자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 두는 조직이며, 위원회는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조직이고, 사무국은 협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따라서 설립초기에는 심판변론인협회에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사무국의 4개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3.2 임원구성

사단법인 형태의 협회에서는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약간 명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심판변론인협회의 임원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약간 명으로 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회장에 한하여는 상근부회장을 둘 필요가 있다.

5.4 업무에 따른 소요인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인건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 필요인원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설립초기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예산편성, 회원관리, 회비부과 및 징수, 협회 회계업무 등을 담당할 총무회계담당자 1인과 협회의 운영사업업무를 담당할 협회사업담당자 1인과 사무국내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하여 3인의 인원이 시작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산규모 및 사업범위 등의 확대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인원확충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심판변론인협회설립 후 논의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5.5 심판변론인협회 재정확보방안

심판변론인협회의 운영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협회 구성원인 회원의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설립초기에는 현재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280명이 전원 협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회원확보 목표치를 정하여 매년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될 경우 심판변론인협회의 적극적인 사업홍보 등을 통하여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후 심판변론인협회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인 유도와 홍보가 필요하다. 예컨대 심판변론인협회가 주체가 되어 각 대학 로스쿨에서 심판변론인의 역할 및 중요성,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회 또는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세무사회는 모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는 법률로써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협회가 중심이 되어 회원을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업무영역에 있어서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업무의 건전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협회의 재정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현행 해양안전심판법상 심판변론인의 협회에의 의무가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심판변론인협회의 재정확보와 심판구조사업의 건전성, 해양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해양안전심판법에 협회에의 의무가입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협회설립 초기에는 국선심판변론인 운영과 관련하여 심판변론인협회가 정부로부터 심판구조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신입심판변론인에 대한 연수교육을 통한 교육수입도 가능하다. 해양안전심판원의 본연의 업무인 심판과 조사 이외의 사무에 대해서는 심판변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사업비 예산은 단순한 실비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의 관리비도 포함시켜 책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양안전심판에서 직접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기사 및 도선사를 위해 한국해기사협회 및 한국도선사협회는 회원회비의 일정비율을 회원의 해양안전심판구조사업비로 책정한 후, 이를 심판변론인협회에 지원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심판변론인의 심판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회원권리옹호를 위한 각 협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이를 위해 양협회간의 심판구조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심판변론인협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대한 광고수입도 협회의 중요한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의 노력여하에 따라 수익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5.6 심판변론인협회 주요사업

심판변론인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해양안전심판법 제3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하여 보장된 법정사업이다. 즉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구조사업,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위임인간의 분쟁조정, 해양안전심판 상담, 해양사고의 조사·연구, 해양안전심판관계 법령의 연구,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업(안)을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그런데 심판변론인협회의 법정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사업(안)은 현재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심판·조사업무 이외에 해양사고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될 수밖에 없다. 향후 현재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심판변론인협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원 본연의 업무인 심판과 조사업무에 중점을 두고, 장기

Table 2 Business item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Maritime Counsellors

법 정 사 업	구체적인 추진사업(안)
- 해양사고관련자 심판구조사업	- 국선심판변론인제도 운영 - 심판변론인 등록업무 - 심판구조사업 기금 조성
- 해양사고의 방지에 관한 사업	- 해양사고 방지 세미나 개최 운영 -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개최 운영 - 모의해양안전심판 경진대회 개최 운영
- 심판변론인과 위임인간의 분쟁조정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해양안전심판 상담	- 인천, 목포, 부산, 서울에 무료 해양안전심판 상담소 운영
- 해양사고의 조사·연구사업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수행
- 해양안전심판관계법령의 연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수행
-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정비	- 재결서 발간, 정기간행물 발간, 해양사고통계 정보화 사업 등
-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 신규등록 심판변론인 연수교육 실시 - 심판변론인 자질 향상을 위한 초급·중급·상급과정 연수교육 실시
-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 심판관 및 조사관 연수교육 실시 - 집행유예대상자 교육실시

적으로는 심판·조사 이외의 업무는 심판변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 결 어

심판변론인협회 설립과 관련하여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가 해양안전심판법에 규정된 이래 1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협회를 설립하지 않은 점은 1999년 당시 해양안전심판법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 단체의 협회 설립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록 설립 초기에는 소규모의 단체로 시작할 수밖에 없으나, 일단 협회가 설립되면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에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심판변론인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심판변론인 중에서 심판변론인협회 준비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재정확보와 심판구조사업의 건전성, 해양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해양안전심판법상에 협회의 의무가입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변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법상에 신규로 등록된 심판변론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현재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심판변론인협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해양안전심판원은 심판원 본연의 업무인 심판과 조사업무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심판·조사 이외의 업무는 심판변론인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곽윤직(2003), 민법총칙, 서울 : 박영사, p.131.
- [2]김상용(2003), 민법총칙, 서울 : 법문사, p.224.
- [3]대한변호사회(2002), 대한변협50년사, pp.106-107.
- [4]대한변리사회(2007), 대한변리사회60년사, p.137.
- [5]심근형(1996), 해난심판법, 서울 : 고산사, p.306.
- [6]이철환(2005), “무료심판변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해양안전환경학회지 제11권 제1호, p.2.
- [7]한국세무사회(2002), 한국세무사회40년사, p.152.
- [8]森清(1967), 海難審判制度の研究, 東京 : 中央大出版部, p.308.
- [9](財)海難審判協會(2008), 海難と審判 第159号, pp.31-35.
- [10]日本海事補佐人會(2009), 會誌 第9号, pp.64-65.
- [11]www.maia.or.jp/index.html

원고접수일 : 2010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0월 8일
 원고채택일 : 2010년 10월 14일